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1

발의연월일: 2020. 7. 17.

발 의 자: 김철민ㆍ이원욱ㆍ이정문

민형배 · 이해식 · 강선우

김민철 · 한병도 · 이용선

안호영 · 권칠승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하며, 기존에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전환대출의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이후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2009년"을 "2012년"으로 한다.

법률 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전환대 |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
| 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 | |
| (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 |
| 그 범위는 <u>2009년</u> 12월 31일까 | <u>2012년</u> |
| 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 |
| 법률 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설 | 법률 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설 |
| 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부칙 | 부칙 |
|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3 | <u><</u> 삭 제> |
|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 |
|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 |
| 가진다. | |